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. 6. 14 선고 2017가단99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7. 5. 10

판 결선고 2017. 6. 14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.3. 21. 접수 제6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.

나. 2016. 3. 21.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. 3. 17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6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호증의 1내지 5, 제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.

그럼에도 피고는 발급용도를 속인 채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작성하였다.

따라서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0다75044, 75051판결 등 참조).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, 갑 제1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양우석

별지